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 제목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을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함 가공제품의 종류별·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3. 재발방지대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결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합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결합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공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공제품(이하 “결합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결합 가공제품의 종류별·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1. 결합 가공제품의 종류별·모델별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결과(조치기간, 조치수량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제1호의 조치결과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조치계획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u>3. 삭제</u>	<u><삭 제></u>
<u>4. 삭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5. 재발방지대책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3. 재발방지대책 <u><삭 제></u>